

경운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입학전형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전형자격기준의 설정 및 심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입학과장으로 한다.

제3조(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(전형유형, 지원자격, 전형요소 및 반영방법, 사정방법, 전형일정 등)에 관한 사항
3. 기타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소위원회)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지원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